

[보장내용]

□ 지급보험금의 계산

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1.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
2.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
3.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

**【제조달가액】**

보험의 목적과 동형·동질의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

**【보험가액】**

제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

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)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제조달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.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1. 다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: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}}{\text{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}}$$

2.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: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}}{\text{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}}$$

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에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.

**【부가설명】**

보험가입금액 5억원 가입시

보험목적A : 보험가액 6억원 → 보험가입금액 3억원

보험목적B : 보험가액 4억원 → 보험가입금액 2억원

(합계 10억원) (합계 5억원)

※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.

④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.

⑤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

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.

**【상법 제682조(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)】**

-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. 다만,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. 다만,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손해액의 조사결정

-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 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며 재조달차액을 보상합니다.

**【재조달차액】**

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

-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□ 계약내용의 변경

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,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□ 보장(보상)의 종류, 보험금지급사유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사유   | 지급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---|--|---|------|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자동차사고<br>부상치료비(1~7급)<br>[기본계약]          |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중중자동차사고<br>부상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,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(상해등급별 차등지급)   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상해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2~3급</td> <td>5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(가입금액 100만원 기준) | 상해등급 | 지급금액 | 1급 | 100만원 | 2~3급 | 50만원 |
| 상해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|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2~3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|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교통상해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사고(운전중, 탑승중, 비탑승중, 약관 참조)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교통상해후유장해<br>(3~100%)                    | 교통사고(운전중, 탑승중, 비탑승중, 약관 참조)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3~100%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| 보험가입금액<br>×지급률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일반상해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일반상해후유장해<br>(3~100%)                    |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3~100%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| 보험가입금액<br>×지급률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신주말교통상해<br>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주말(금요일, 토요일, 법정공휴일(일요일을 포함) 및 근로자의 날)에 교통사고(운전중, 탑승중, 비탑승중, 약관 참조)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신주말교통상해<br>후유장해<br>(3~100%)             | 신주말(금요일, 토요일, 법정공휴일(일요일을 포함) 및 근로자의 날)에 교통사고(운전중, 탑승중, 비탑승중, 약관 참조)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3~100%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 보험가입금액<br>×지급률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대중교통이용중<br>교통상해사망                       | 대중교통이용중 사고(약관참조)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대중교통이용중<br>교통상해후유장해<br>(3~100%)         | 대중교통이용중 사고(약관참조)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3~100%의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| 보험가입금액<br>×지급률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일반상해입원일당<br>(1일이상180일한도)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일반상해중환자실<br>입원일당<br>(1일이상180일한도)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간병인사용<br>상해입원일당(요양병원제외)(1일<br>이상180일한도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(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)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  | 구 분  | 지급금액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  | 간병인 사용금액이<br>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×50%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간병인 사용금액이<br>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× 100%  |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|

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병인사용<br>상해입원일당(요양병원)(1일이상<br>18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| 입원1일당 가입금액<br>(180일한도)  |
| 간호간병통합서<br>비스사용<br>상해입원일당<br>(요양병원제외)<br>(1일이상180일<br>한도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(한방병원 포함)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원1일당 가입금액<br>(180일한도)  |
| 교통상해입원일당<br>(1일이상18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사고(운전중, 탑승중, 비탑승중. 약관 참조)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<br>(1일이상1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입원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(1회 입원당 10일 한도)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일반상해입원일당<br>(1일이상3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(1회 입원당 30일 한도)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<br>입원일당<br>(1일이상18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신주말교통상해<br>입원일당<br>(1일이상18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주말(금요일, 토요일, 법정공휴일(일요일을 포함) 및 근로자의 날)에 교통사고(운전중, 탑승중, 비탑승중. 약관 참조)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상해응급실내원비<br>(응급)  |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골절진단비<br>(치아파절제외)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치아파절 제외. 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된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골절진단비<br>(치아파절포함)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치아파절 포함. 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된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5대골절진단비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된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화상진단비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일반상해수술비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상해수술비(1~8<br>종) (연간1회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1~8종 수술 및 시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 | 각 종의 보험가입금액<br>(연간 1회한) |
| 골절수술비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(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5대골절수술비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(약관 참조)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화상수술비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(약관 참조)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뇌·내장손상<br>수술비   | 상해사고로 사고일부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(약관 참조)으로 개두(開頭)수술을 받거나, 내장손상(약관 참조)으로 개흉(開胸) 수술 또는 개복(開腹) 수술을 받은 경우(최초 1회한 지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| 중대한특정상해<br>수술비(최초1회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,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(최초 1회한 지급)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|

| 중대한화상및부식<br>진단비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최초 1회한 지급)   | 보험가입금액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|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깁스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(Cast)치료를 받은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자동차사고부상<br>치료비 I             |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(상해등급별 차등지급)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상해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1,000만원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3~4급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150만원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80만원</td> </tr> <tr> <td>7급</td> <td>40만원</td> </tr> <tr> <td>8~11급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>12~14급</td> <td>1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</p> | 상해등급 | 지급금액 | 1급 | 1,000만원 | 2급 | 500만원 | 3~4급 | 300만원 | 5급 | 150만원 | 6급 | 80만원 | 7급    | 40만원 | 8~11급 | 20만원 | 12~14급 | 10만원 |
| 상해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3~4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8~11급                        | 2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12~14급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자동차사고부상<br>치료비 II            |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자동차사고부상<br>치료비(1~11급)        |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(상해등급별 차등지급)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상해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250만원</td> </tr> <tr> <td>3~5급</td> <td>150만원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40만원</td> </tr> <tr> <td>7급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>8~11급</td> <td>1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가입금액 500만원 기준)</p>  | 상해등급 | 지급금액 | 1급 | 500만원   | 2급 | 250만원 | 3~5급 | 150만원 | 6급 | 40만원  | 7급 | 20만원 | 8~11급 | 10만원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상해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3~5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8~11급 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자동차사고부상<br>(차량단독사고제외)<br>치료비 | 차량단독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(약관 참조)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(상해등급별 차등지급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상해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1,000만원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3~4급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150만원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80만원</td> </tr> <tr> <td>7급</td> <td>40만원</td> </tr> <tr> <td>8~11급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>12~14급</td> <td>1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</p> | 상해등급 | 지급금액 | 1급 | 1,000만원 | 2급 | 500만원 | 3~4급 | 300만원 | 5급 | 150만원 | 6급 | 80만원 | 7급    | 40만원 | 8~11급 | 20만원 | 12~14급 | 10만원 |
| 상해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3~4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만원 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8~11급                        | 2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 12~14급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 |  |      |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|       |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
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통사고처리지원금IV<br>(비탑승중 포함)  |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<br>한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(음주, 무면허, 약물복용 제외)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구분  | 보험가입금액<br>3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5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7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1억원<br>기준    | 보험가입금액<br>1.5억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2억원<br>기준    | 보험가입금액<br>2억5천만원<br>기준 |
|   | 42일~69<br>일 진단시   | 1천만원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1천5백만<br>원             |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2.5천만원                 |
|   | 70일~139<br>일 진단시  | 2천만원                  | 3천만원                  | 4천만원       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7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8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9천만원                   |
|   | 140일<br>이상<br>진단시   | 3천만원       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       | 7천만원                  | 1억원                    | 1억2천만<br>원             | 1억5천만<br>원             | 2억원                    |
|   |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~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<br>한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에게 1~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가입금액<br>3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5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7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1억원<br>기준   | 보험가입금액<br>1.5억원<br>기준 | 보험가입금액<br>2억원<br>기준    | 보험가입금액<br>2억5천만원<br>기준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천만원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7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사고처리지원금IV<br>(비탑승중)(기가입<br>자용)  |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<br>한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~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<br>한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에게 1~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보험가입금액<br>3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5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7천만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1억원<br>기준   | 보험가입금액<br>1.5억원<br>기준  | 보험가입금액<br>2억원<br>기준    | 보험가입금액<br>2억5천만원<br>기준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천만원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7천만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사고<br>처리지원금(중대법<br>규위반,6주미만)II  |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(음주, 무면허, 약물복용 제외)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가 42일(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)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구분  | 보험가입금액<br>300만원<br>기준 | 보험가입금액<br>500만원<br>기준 | 보험가입금액<br>700만원<br>기준 | 보험가입금액<br>1000만원<br>기준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1주이상~4주미만<br>진단시  | 150만원                 | 15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| 500만원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4주이상~6주미만<br>진단시  | 300만원   | 500만원                 | 700만원                 | 1,000만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자동차사고<br>별금Ⅱ(대인,<br>3천만원한도)(비<br>승중포함)      |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별금을 부담하는 경우<br>※ 1사고당 별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별금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'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을 보장하는 계약'도 포함됨 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<br>보호구역<br>내<br>교통사고 | 3천만원 한도   |
|   |  | 상기<br>이외                 | 2천만원 한도   |
| 자동차사고<br>별금Ⅱ(대인,<br>3천만원한도)(비<br>승중)(기가입자용) |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별금을 부담하는 경우<br>※ 1사고당 별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별금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'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을 보장하는 계약'도 포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<br>보호구역<br>내<br>교통사고 | 3천만원 한도   |
|   |  | 상기<br>이외                 | 2천만원 한도   |
| 자동차사고<br>별금(대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에 따른 별금형이 확정되어 별금을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별금액을 실손 비례보상<br>※ 1사고당 별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별금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'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을 보장하는 계약'도 포함됨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백만원 한도   |
| 자동차사고<br>변호사선임비Ⅱ(비<br>탑승중포함)                | 자동차 운전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(약식기소 제외)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제450조에 의거,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한도 |
| 자동차사고<br>변호사선임비Ⅱ(비<br>탑승중)(기가입자<br>용)       |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(약식기소 제외)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제450조에 의거,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한도 |
| 자동차사고<br>변호사선임비<br>(정식재판청구)                 |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「형사소송법」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한도 |

|   |  |              |   |
|---|--|--------------|---|
| 자동차사고<br>변호사선임비Ⅲ(경<br>찰조사단계포함)(<br>비탐승중포함)          |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(약식기소 제외)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제450조에 의거,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(단,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“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”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) |              | 5천만원 한도   |
|   | 자동차 운전 후 비탐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(약식기소 제외)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제450조에 의거,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(단,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5천만원 한도   |
|   |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도   |              |   |
|   | 부상등급   | 보상한도         |   |
|   | 1~3급   | 5천만원         |   |
|   | 4~7급   | 3천만원         |   |
|   | 8~14급  | 1천만원         |   |
| 자동차사고<br>변호사선임비Ⅲ(경<br>찰조사단계포함)(<br>비탐승중)(기가입<br>자용) | 자동차 운전 후 비탐승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(약식기소 제외)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제450조에 의거,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(단,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5천만원 한도   |
| 급발진 자동차사고<br>변호사선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「급발진 자동차사고 분쟁」이 발생하여,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 중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분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  |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한도   |
| 자동차사고성형<br>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(약관 참조)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|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|
| 강력범죄피해  |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 |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|
| 행정소송<br>법률비용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,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,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| 변호사<br>비용    | 『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』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(단, 1500만원 한도) |
|   |  | 인지역<br>+ 송달료 | 500만원 한도  |

|  |  |               |   |   |
|--|--|---------------|---|---|
| 민사소송<br>법률비용손해   |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,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 중 「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」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,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| 변호사<br>비용     | 『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』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(단, 1500만원 한도) |   |
|  | ※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| 인지액<br>+ 송달료  | 500만원 한도  |   |
| 자동차사고<br>민사소송<br>법률비용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,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 중 「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」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,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| 변호사<br>비용     | 『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』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(단, 1500만원 한도) |   |
|  | ※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| 인지액<br>+ 송달료  | 500만원 한도  |   |
| 가족과실치사상<br>벌금  |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(과실치상) 또는 형법 제267조(과실치사)에 따른 벌금형(단,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)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 | 과실치상          | 500만원 한도  |   |
|  |  | 과실치사          | 700만원 한도  |   |
| 업무상과실중과실<br>치사상벌금  | 형법 제268조(업무상 과실·중과실치사상)에 따른 벌금형(단,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)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 |               | 2천만원 한도   |   |
| 가족일상생활중<br>배상책임<br>(대물누수50만원,<br>누수외20만원공제)              |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 |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한도<br>(대물 누수50만원,<br>누수외20만원 공제)   |   |
| 일반상해종합병원<br>입원일당<br>(1일이상180일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   |               | 입원1일당 가입금액<br>(180일한도)  |   |
| 간호간병통합서<br>비스사용<br>상해입원일당<br>(요양병원제외)<br>(1일이상30일한<br>도)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(한방병원 포함)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(1회 입원당 30일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입원1일당 가입금액<br>(30일한도)   |   |
| 척추상해수술비(<br>관혈/비관혈)(연<br>간1회환,동일사<br>고당1회지급)             |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, 그 척추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| 구 분           |   |   |
|  |  | 관혈<br>수술      | 보험계약일로부터<br>1년 미만<br>보험계약일로부터<br>1년 이상  | 보험가입<br>금액의<br>50%<br>보험가입<br>금액의<br>100% |
|  |  | 비관<br>혈수<br>술 | 보험계약일로부터<br>1년 미만<br>보험계약일로부터<br>1년 이상  | 보험가입<br>금액의<br>25%<br>보험가입<br>금액의<br>50%  |
| (관혈수술, 비관혈수술<br>각각 연간 1회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|   |

| 창상봉합술치료비(안면부,1일1회한,연간3회한)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,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부창상봉합술(3cm이상)(급여)를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<br>(1일 1회한,<br>연간3회한)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창상봉합술치료비(1일1회한,연간3회한)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, 그 치료를 목적으로 “창상봉합술(급여)”를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<br>(1일 1회한,<br>연간3회한)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상해입원통원수술비(동일사고당1회지급)             | 상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통원 또는 당일입원하여 수술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50%</td> </tr> <tr> <td>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| 구 분 | 지급금액 | 통원 또는 당일입원하여 수술 | 보험가입금액의 50%  |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 | 보험가입금액의 100%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통원 또는 당일입원하여 수술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50%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00% 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추간판탈출증수술비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치료비(급여,연간1회한)         |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(급여)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<br>(연간1회한)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 I (1~6급, 연간1회한) |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00%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40%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30%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20%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0%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<br>보험가입금액<br>(연간1회한)         | 구 분 | 지급금액 | 1급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00% | 2급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40%  | 3급 | 보험가입금액의 30% | 4급 | 보험가입금액의 20% | 5급 | 보험가입금액의 10% | 6급 | 보험가입금액의 10%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00% 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40%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3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30%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4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20%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0%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0%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 I (1~6급, 연간1회한) |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 및 특정외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2/3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/2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/3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/6</td> </tr> <tr> <td>6급</td> <td>보험가입금액의 1/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<br>보험가입금액<br>(연간1회한,<br>동일사고당1회지급) | 구 분 | 지급금액 | 1급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| 2급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2/3  | 3급 | 보험가입금액의 1/2 | 4급 | 보험가입금액의 1/3 | 5급 | 보험가입금액의 1/6 | 6급 | 보험가입금액의 1/6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2/3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3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/2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4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/3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/6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의 1/6  |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)            |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(부모, 배우자, 자녀 제외)에게 1~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(피해자 1인당) | 보험가입금액 한도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
| 자동차사고<br>별금Ⅱ(대인)<br>(2천만원초과<br>1천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<br>으로써 확정판결 별금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<br>초과한 금액을 1사고당 1,000만원 한도로 보장<br>※ 1사고당 별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<br>(벌칙)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벌금 두가지 사유<br>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'신체<br>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을 보장하는 계약'도 포<br>함됨 | 1천만원 한도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재손해  |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| 손해액(보험가입금액<br>한도)과 손해방지비용을<br>합산한 금액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붕괴·침강·사태손해  | 붕괴, 침강, 사태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| 손해액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풍수재손해(특수건<br>물)   |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, 회오리바람, 폭풍, 폭풍우, 홍수, 해일,<br>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, 수재 또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<br>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| 손해액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난손해  |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, 망가짐, 손상 및<br>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| 손해액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재별금  | 피보험자가 형법 제 170조 또는 형법 제 1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보험금의 종류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</td> <td>벌금액(1500만원한도)</td> </tr> <tr> <td>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</td> <td>벌금액(2000만원한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| 보험금의 종류 | 지급금액 |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| 벌금액(1500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| 벌금액(2000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금의 종류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 | 벌금액(1500만원한도)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 | 벌금액(2000만원한도)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재배상책임  |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<br>부상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<br>발생한 경우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보험금의 종류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인사고 사망</td> <td>피해자 1인당 10,000만원(실손해액이<br/>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00만원)</td> </tr> <tr> <td>대인사고 부상</td> <td>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(약관참조)에서<br/>정하는 금액</td> </tr> <tr> <td>대인사고 부상(완치 후에도<br/>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)</td> <td>후유장해급별<br/>지급보험금표(약관참조)에서 정하는 금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보험금의 종류 | 지급금액 | 대인사고 사망         | 피해자 1인당 10,000만원(실손해액이<br>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00만원) | 대인사고 부상         |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(약관참조)에서<br>정하는 금액 | 대인사고 부상(완치 후에도<br>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) | 후유장해급별<br>지급보험금표(약관참조)에서 정하는 금액 |
| 보험금의 종류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인사고 사망   | 피해자 1인당 10,000만원(실손해액이<br>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00만원)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인사고 부상   |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(약관참조)에서<br>정하는 금액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인사고 부상(완치 후에도<br>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후유장해급별<br>지급보험금표(약관참조)에서 정하는 금액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체손해배상책임Ⅱ<br>(특수건물)   |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<br>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| 손해배상금(보험가입금액<br>한도)과 손해방지비용을<br>합산한 금액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족과실치사벌금비<br>용  | 피보험자가 형법 제 266조 또는 형법 제 267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보험금의 종류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형법 제266조에 의한 벌금</td> <td>벌금액(500만원한도)</td> </tr> <tr> <td>형법 제267조에 의한 벌금</td> <td>벌금액(700만원한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| 보험금의 종류 | 지급금액 | 형법 제266조에 의한 벌금 | 벌금액(500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법 제267조에 의한 벌금 | 벌금액(700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금의 종류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법 제266조에 의한 벌금   | 벌금액(500만원한도) 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법 제267조에 의한 벌금   | 벌금액(700만원한도) 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재대물배상책임<br>(특수건물)  |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<br>배상책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 | 손해배상금(보험가입금액<br>한도)과 손해방지비용을<br>합산한 금액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족화재별금  | 피보험자(가족포함)가 형법 제 170조 또는 형법 제 1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<br>경우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보험금의 종류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</td> <td>벌금액(1500만원한도)</td> </tr> <tr> <td>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</td> <td>벌금액(2000만원한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| 보험금의 종류 | 지급금액 |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| 벌금액(1500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| 벌금액(2000만원한도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금의 종류   | 지급금액 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 | 벌금액(1500만원한도)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 | 벌금액(2000만원한도)  |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족일상생활중배상<br>책임(주택내화재및<br>폭발제외)(대물<br>누수 50만원,<br>누수의20만원 공제) | 피보험자가 「타인의 신체의 장애에 대한 법률상의<br>배상책임」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<br>법률상의 배상책임」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| 손해배상금(보험가입금액<br>한도(대물 누수 50만원,<br>누수외20만원공제))과<br>손해방지비용을 합산한<br>금액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주택(화재)임시거주비<br>(1일이상90일한도) |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임시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(1일당 보험가입금액 한도)(90일한도) |
| 주택건물(화재)복구비용               | 화재 및 폭발, 파열로 보험에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| 손해액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급배수시설누출손해(주택)              | 보험개시일* 이후 보험의 목적의 구조,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<br>* 보험개시일 : 보험가입일 90일 이후       | 손해액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
|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             |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 | 수리비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1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           |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1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  | 수리비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            |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  | 수리비 전액<br>(보험가입금액 한도)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합상해진단비(경증상해진단비)(연간 1회한)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경증/중등증/중증 상해로 진단확정된 경우 구분 및 부위별(약관 참조)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합상해진단비(중등증상해진단비)(연간 1회한)  |   |  |
| 통합상해진단비(중증상해진단비)(연간 1회한)   |   |  |
|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 외상성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 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해재활치료비<br>(연15회/30회/60회한)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입원 중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를 받은 경우(각각 1일1회)  | 보험가입금액<br>(1일당 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골절철심제거수술비 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(치아파절제외)로 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의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절(무릎 및 고관절) 수술비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관절 손상분류표(약관참조)에서 정한 관절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무릎인대파열/연골손상수술비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분류표(약관참조)에서 정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해CT검사지원비<br>(연간1회한,급여)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상해CT검사(급여)를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해MRI검사지원비<br>(연간1회한,급여)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상해MRI검사(급여)를 받은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상성척추손상수술비 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비 (연간1회한)    |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 확정된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상해수술비 (창상봉합술제외)          |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(창상봉합술 제외)을 받은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골절(치아파절제외) 부목치료비         | 상해로 골절분류표(약관 참조)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받고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진단비(최초1회한)   | 상해로 인해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의 정의(약관참조)에서 정한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(연간1회한) | 상해로 인해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의 정의(약관참조)에서 정한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상해흉터복원(성형) 수술비           |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로 안면부, 상지,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| 안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만원 (수술1cm당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상지/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7만원 (수술1cm당)  |
| 상해종합병원수술비  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비              |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일반상해80%이상후 유장해           |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%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일반상해50%이상후 유장해           |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%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보이스피싱손해                  | 보이스피싱(전화금융사기)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(또는 지출한) 경우  | 100만원 한도 (금전손해액의70%)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보복운전피해손해                 |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, 고소,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                | 보험가입금액 (하나의 보복 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) |               |

주1)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. 자세한 사항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,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)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2) 갱신계약의 경우,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

-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(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,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)부터 입니다. 다만,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봅니다.

-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(비탑승중포함),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(비탑승중)(기가입자용),

교통사고처리지원금(중대법규위반,6주미만),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, 자동차사고별금Ⅱ(대인, 3천만원한도)(비탑승중포함), 자동차사고별금Ⅱ(대인, 3천만원한도)(비탑승중)(기가입자용), 자동차사고별금Ⅱ(대인,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), 자동차사고별금(대물),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Ⅱ(비탑승중포함),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Ⅱ(비탑승중)(기가입자용),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Ⅲ(경찰조사단계포함)(비탑승중포함),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Ⅲ(경찰조사단계포함)(비탑승중)(기가입자용),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,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(대물누수50만원,누수외20만원공제),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(주택내화재및폭발제외)(대물 누수 50만원, 누수 외 20만원 공제),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중상해불송치및불기소), 화재손해, 붕괴·침강·사태손해, 풍수채손해(특수건물), 도난손해, 주택(화재) 임시거주비용(1일이상 90일한도), 주택건물(화재) 복구비용, 급배수시설누출손해(주택),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, 신 1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, 2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, 화재배상책임, 화재대물배상책임(특수건물), 신체손해배상책임Ⅱ(특수건물),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,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.

|  |
|--|
| 다수의 보험계약이란?  |
|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·질병·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·장기손해·개인연금·퇴직보험으로 합니다. |

-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.
-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